

국외훈련결과보고서(요약본)

성명	김태형	소속	법제처
훈련국	미국	훈련기간	2023.8.7. ~ 2024.8.6.
훈련기관	미주리 주정부 경제개발부	보고서 매수	104
훈련분야	전문법제		
보고서 제목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활성화 및 일상회복을 위한 영미국가의 규제혁신 등 대응방안 연구		
내용 요약	<p>2020년 1월,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했다. 이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적 비용을 요구했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많은 국가가 유동성을 투입하여 경제를 회복시키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특히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더 큰 타격을 입었고, 이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p> <p>각국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했으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많은 규제를 철회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는 법적인 도전을 받아왔고, 상당 부분이 좌절되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환경 보호, 소비자 권리, 작업 안전 등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청정 에너지와 의료 접근성 향상에 집중하며 다른 방향성을 보였다.</p> <p>이와 같이 규제 정책의 방향은 각 행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졌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 미국의 단기적 입법조치와 중장기 규제 완화 또는 현대화 경험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p> <p>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미국은 코로나 피해 지원, 구</p>		

호 및 경제 안정법 등 여러 단기적 입법 조치를 채택했다. 코로나 피해 지원, 구호 및 경제 안정법은 광범위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개인에게는 소득 기준에 따라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고, 실업자를 위한 강화된 실업 보험 혜택을 제공하였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과 같은 대출 지원을 제공하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유동성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 구제 조치가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방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주 및 지방 정부를 위한 긴급 자금과 세금 감면 및 공제 확대, 주거 지원 강화 등 다양한 경제적 충격 완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단기적 입법조치는 미국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 충격으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게 도와 주었지만 몇 가지 한계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경제 분석 모델에 따르면 단기적인 경제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일부 성공했으나 이는 임시적 효과로 제한되었다. 둘째, 대규모 재정 지출은 단기적 경제 회복을 도왔지만, 장기적으로 부채 증가, 인플레이션 상승 및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의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셋째, 일부 조치들은 특정 산업이나 대기업에 집중되어 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넷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나 소규모 비즈니스가 도움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잘 자리잡은 기업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경향이 있었다. 다섯째, 코로나 19 관련 실업 수당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유인을 왜곡하여 일자리 복귀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장기 규제개혁을 통해 미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주요 조치로는 여러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한 규제 완화 및 비용 통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대통령 행정명령 13771호는 새로운 규제 도입 시 최소 2개의 기존 규제를 제거하도록 규정했고, 행정명령 13777호는 각 기관에 규제개혁 담당관을 지정하고 규제개혁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연방 자문위원회의 효용성 평가 및 개선, 연방 기관 지침 문서를 통한 법치주의 증진, 민사 행정 집행 및 재판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있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보는 연구 또는 정부 발표도 있지만 법적 도전과 사법부의 판결로 좌절되는 경우도 많았고, 규제 완화의 실질적 효과와 관련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규제 정책 방향이 상이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와 관련된 행정명령들을 취소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설치했던 규제 개혁 담당관 및 규제 개혁 태스크포스 등을 폐지하였다. 다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 및 독립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검토 현대화 각서를 발령하여, 공중 보건, 안전, 경제 성장, 사회 복지 등을 증진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시하였는데 이를 위해 행정명령 14094호를 통해 규제 검토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규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유의미한 고용 규정의 재도입, 부당한 수수료에 대한 제재, 경쟁을 저해하는 경업 금지 조항의 금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개별적 입법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단기적 입법조치와 중장기 규제개선 추진은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대규모 재정 정책과 경기 부양책의 중요성이다. 미국은 코로나 피해 지원, 구호 및 경제 안정법 등을 통해 대규모 재정 지출을 실행했고, 이는 경제 회복을 신속하게 도모하고, 가계 소득을 안정시키며 소비를 촉진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미국이 이를 실행하면서 나타났던 효과와 한계는 향후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에 대응할 때 대응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도의 유연성이다. 미국은 특히 우리나라보다 유연한 고용 체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고용 계약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인력

조정을 신속하게 이룰 수 있었고, 다양한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과 훈련 기회 제공을 통해 근로자의 빠른 재배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 셋째, 미국은 예산을 법률로 의결하여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산법률주의를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현행 우리나라 예산서상의 예산총칙과 부대의견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국회에서의 합의 사항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여야 간의 예산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예산법률주의는 예산 관련 법률 개정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넷째, 규제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성 확보이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에 규제 정책이 크게 달랐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규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기업과 시민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확한 규제효과 및 비용 평가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주장했으나, 그 효과와 비용의 측정에 대한 비판도 존재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규제 검토를 현대화하고,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 분석 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규제의 효과와 비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